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4년 5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 정부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 상황별 안내 -
-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서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

■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전(全)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하여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하였다.

■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되어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권(총 432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하였다. 또한 자료의 전자파일(PDF)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지난해까지는 인쇄물 형태 자료집을 전국 주요 기관에 배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자료에 수록된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하여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자유롭게 원고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데이지 파일)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상원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952. 사회보장조정과 2024. 5. 9.

참고 1 생애주기 및 대상별 분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임신·출산·영유아	임신·출산	
	임신준비	임신·출산 진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
	고용 안정	출산급여, 여성 경제활동 촉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등
	생활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긴급복지 지원제도
	영유아	
	보육비 지원	가정 양육수당, 보육료, 누리과정, 부모급여, 시간제 보육, 아동수당 등
	건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
	돌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아동·청소년	입양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입양아동 지원 등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보육비 지원	연장형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등
	건강	국가예방접종, 건강보험 산정특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등
	교육	고교학비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우유급식 등
	역량강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활동 지원 등
	돌봄	가정위탁아동 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등
	고용	취업연계 장려금,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현장실습 지원금 등
	보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청소년 쉼터,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등
	입양	입양아동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등
청년층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통화문화이용권 등
	자립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심리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위(Wee) 프로젝트, 청소년상담 1388, 치료재활센터 등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등
	교육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고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학습병행 등
	주거지원	행복주택 공급, 매입임대주택 지원, 전세임대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주거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통합사례관리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건강지원	국가건강검진제도, 안환자 의료비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청년층	법률 금융지원	법률구조 제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국방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사회참여	온가족보듬사업

구분	주요 내용	
노령층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등
	주거	주택연금제도, 매입임대주택 지원, 행복주택 공급, 에너지바우처 등
	건강·의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치매검진 지원 등
	고용·일자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부지원 일자리 등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법률·사회참여	온가족보듬사업, 법률구조 제도, 디지털배움터,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장애인	건강	발달장애 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친화 건강검진 등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 등
	양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정보화교육 등
	주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등
	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등록신청,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연금, 요금감면 등
	돌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활동지원 등
	고용	장애인 근로지원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등

참고 2 2024년 신규사업 및 주요 변경사항

■ 2024년 주요 신규 추가 사업

사업명	소관부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여성가족부
금융피해자와 금융소외자 대상 대출 지원	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주요 변경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및 내용 확대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시술별 횟수 상이 → (변경) 소득기준 폐지, 체외수정 시술을 통합 확대하여 총 20회
임신·출산 진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 인상 - (기존)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변경)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은 태아 당 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 인상 - (기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바우처) → (변경)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바우처)

사업명	주요 변경제도
부모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 인상 - (기존) 0~1세 자녀 가정 양육 시 월 35만 원~70만 원 → (변경) 월 50만 원~100만 원
자녀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 인상 - (기존) 자녀 1인당 연 50만 원~80만 원 → (변경) 연 50만 원~1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확대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 (변경) 6+6 부모육아휴직제
늘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다자녀가정 등의 초등학교 → (추가) 희망하는 초등학교 학생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 인상 - (기존) 연 11만 원 → (변경) 연 13만 원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 인상 - (기존) 월 최대 32만 3,180원 → (변경) 월 최대 33만 4,810원
온가족 보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운영 - 가족희망드림, 청소년한부모 지원,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가족상담 및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II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 국가가 책임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과 국내 입양 활성화, 가정형 보호 정책 추진 의지 다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1일(토)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입양특례법 제5조)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제정

■ 기념행사에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 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했으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 대통령 표창은 입양부모이자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신님과 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이 수상했다.
- 전성신님은 2013년 아이를 입양한 이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해 다른 가정들이 입양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왔고, 8년간 학교·유치원 등에서 입양 인식 개선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 송현종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 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 아울러,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의 진료를 전담하고, 결연 심사에 참여하여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이어주는 데 자문 역할을 담당해온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조기혜 센터장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봐온 동방사회복지회 이수호 위탁모, 예비양부모 상담과 아동 국내 입양에 힘써온 대한사회복지회 강신혜 본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고, 입양아동으로서 입양 인식 개선에 앞장서 활동하고 있는 박익찬 학생을 비롯한 10명의 유공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입양 정책 방향〉

- 그간 입양 관련 정책은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일(25.7.19)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나,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3년도 입양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제 입양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간 79명의 아동이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된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모두 국내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비부모들이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국제입양 건수-비율 ('22) 142명, 43.8% → ('23) 79명, 34.5%

■ 이를 위해 예비양부모 신청 및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입양 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체계 개편 이전에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양부모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하여,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반적으로 개월수가 높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은 국내 입양이 어려워 국외에서 입양부모를 만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하여,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23년 기준 국내 입양은 50% 이상이 1세 미만(150명 중 75명), 국외 입양은 1세 미만은 없고 1~3세가 96% 차지(79명 중 76명)

〈가정위탁 활성화〉

■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그간 제기되었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

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여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 신속한 개정 및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5년 시범사업 예정)

〈입양 전 보호 강화〉

-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육구 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 전체 시설보호아동 11,899명 중 4,986명(41.9%)

-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 또한 정비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 지난 수원 아동 사망 사건('23.6월)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 번호(1308) 등을 마련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956. 아동정책과 2024. 5. 10.

III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적발 환수 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본인확인 예외 사유 〉

-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이종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976. 보험정책과 2024. 5. 17.

IV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발령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자체 안내 및 준비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올해 7월부터 신규 실시하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담당자)에 배포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 ('21,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우울증 100만 명 돌파('22), 20대 우울증 약 2배 증가('18년 99,796명 → '22년 194,322명)

** 정신과 진입장벽 : 제도적 불이익(34.0%), 사회적 인식(27.8%), 약 부작용(18.6%), 치료비용(16.1%) ('21,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 후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5일에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로서, 2024년 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 [2023.12.5. 보도자료 참조]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쏠단계 관리로 대전환”

** ('24년) 8만 명 → ('25년) 16만 명 → ('26년) 26만 명 → ('27년) 50만 명 ('24~'25년) 정신건강 위험군, ('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 ('23.8.21, 국무회의 보고)

< 지원 대상자 >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올해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 지원 대상자 기준 >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

-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

-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

-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

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등록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월 21일(화) 제정·발령되었다.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 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 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한다.

*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육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 (<https://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으 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원활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서비스 신청 결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자 등과 협조하여 차질 없이 사업 준비를 해나가겠다. 민간의 많은 심리상담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987. 정신건강관리과 2024. 5. 21.